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095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민식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규동

변론 종결 2020. 9. 23.

판결 선고 2020. 11. 1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5217561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33,800원 및 그 중

91,241,68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의 2016. 10. 14. 체결된 58,089,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8,0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1.(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89,100,000원과 2019. 5. 9.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었고, A이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이후는 연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이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A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6. 6. 1.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위 대출금에 대하여도 당초 대출기한(2015. 11. 11.)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그 대출기한을 2016. 11. 11.로, 다시 2017. 11. 10.로, 다시 2018. 11. 9.로, 다시 2019. 5. 9.로 각각연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사고를 모면해 오다가, 2018. 8. 3. 이자 장기 연체로 1차 사고를 거쳐 2019. 5. 9. 원금연체로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9. 8. 30. 중소기업은행에게 91,241,680원(원금 89,100,000원 + 이자 2,141,6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492,120원($89,100,000\text{원} \times 1.8\% \times 112(2019. 5. 10. \sim 2019. 8. 29.) \div 365$, 원 이하 버림)이다.

마.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A이 위 대출금을 당초 대출기한(2015. 11. 11.)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그 대출기한을 2016. 11. 11.로 연장함은 물론이고, 2016. 6. 1. 국세체납사태까지 야기하자, A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사건 신용보증 및 대출실행 당시에는 피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은 그의 처인 피고 C과 각 2분의 ①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2.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0. 14. 접수 제151352호로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435,000,000원)를 경료함으로써, E아파트를 매각하였다.

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소외 H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 J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8.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0. 14. 접수 제1512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07,000,000원)를 경료함으로써, 피고들은 공유하고 있던 E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I 아파트를 피고 C 단독 명의 로 취득하였다.

사. 한편, 피고 B은 E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1/2)에 해당하는 실수령 금원인 58,089,500원[116,179,000원(E아파트의 거래대금 435,000,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양도전 :

K단체)의 2012. 12. 20.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318,821,000원} × 1/2]을 잔금기일인 2016. 10. 14. 처인 피고 C에게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증여액에 피고 C의 돈을 더해서 피고 C 단독 명의로 1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33,800원(대위변제금 91,241,680원 + 미수추가보증료 492,120원) 및 그 중91,241,68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9. 11.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이 국세를 체납할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대출기한을 계속하여 연장하던 중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는바,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대위변제를 통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 및 처분 행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은 E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돈의 1/2 상당인 58,089,500원인데(위 아파트를 처분한 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 중 1/2 상당), 피고 B은 위 돈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책임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 한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8,089,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판사 김우현